

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회계 감사결과 사례집

시설 내 사택에 거주할 경우 공공요금을 내야 하나요?

시설장 등의 사택 무임거주

시설 내 사택의 공공요금을 거주자가 부담하지 않은 사례

- **관련규정**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(보조금 등)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5조
- **지적내용**
 -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또는 법인 관계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내의 사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의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,
 - ☐☐시 관내 ○○애육원에서는 법인 대표이사, 시설장 등이 시설 내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사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거주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시설운영비(보조금)로 납부하고 있었음.